

# 재해방지는 사회전체의 책임



박 은 회  
(성대교수 · 위험관리학회장)

## 1. 머리말

보험의 역사를 보면 14세기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보험이 보험기업의 주력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한데 비하여, 화재보험은 15세기경부터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공제조합(Guild)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666년 영국 런던시에 대화재가 일어나 시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3천2백호가 타버리자 공제 형태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보험회사가 출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에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소방단을 조직하게 된 것이 말하자면 보험자가 방재활동을 시작한 기록일 것이다.

오늘날 화재위험을 관리하는 1차적인 책임은 가계나 기업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최종손해(ultimate loss)를 전가받아 보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방재활동에 소홀하거나,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보험회사가 방지할 경우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2차적으로는 그 손해가 선의의 가입자에게 전가됨으로써 부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3차적으로는 국가전체의 경제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가는 법률(상법)로써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면책하고(659조), 未評價保險을 원칙으로 하며(671조),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과(680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조건과 요율에서 사고방지와 손해경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방재지도와 계몽, 그리고 소방관서에 대한 지원 등으로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계약자에 대해서도 약관으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 2. 보험자의 역할

방재를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은 ① 계약전의 안전점검 ② 약관에 의한 방재유도 ③ 요율에 의한 방재유도 ④ 방재지도와 계몽 ⑤ 소방관서 지원에 의한 간접방재 등 다섯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첫째, 계약전의 안전점검은 특수건물인 경우 특별법(법률 제2482호) 16조에 실시의무가 명기되어 있지만, 특수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약관 19조에 보험회사의 조사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보물건의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약관에 의한 방재유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의나 중과실의 면책(화재보험 보통약관 4 ① ②), ② 중복계약의 통지의무(화재보험 보통약관 6 ① ①), ③ 사기계약의 무효(화재보험 보통약관 7 ①), ④ 보험회사의 해지권(화재보험 보통약관 8 ②), ⑤ 계약자책임에 의한 무효시의 보험료 몰수(화재보험 보통약관 9 ②), ⑥ 손해방지의무의 부과(화재보험 보통약관 11), ⑦ 초과보험의 무효(화재보험 보통약관 13 ② ②), ⑧ 미평가보험체의 채택(화재보험 보통약관 12) 등이다.

셋째, 요율에 의한 방재유도는 ① 용도 ② 구조 ③ 지역등지 ④ 급별·업종별에 따른 요율의 차별화 ⑤ 소화설비에 대한 할인 등이 해당될 것이다.

넷째, 방재지도와 계몽은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시험소의 운영, 간행물의 발간, 방재캠페인, 위험관리 학회와 같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각 손보사의 위험관리부서가 기업의 위험관리지도를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방재의식을 고취하는

활동도 이 범주에 속한다.

다섯째, 소방관서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방재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지원으로 소방장비가 많이 현대화되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손해의 감소액은 출연금액보다도 훨씬 크리라고 생각된다.

### 3. 계약자의 의무

방재에 관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 포함)의 의무는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① 계약전의 의무 ② 사고예방의무 ③ 손해방지의무 ④ 손해발생후의 의무가 될 것이다.

첫째, 계약전의 의무에는 고지의무와 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고지의무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리는 것인데 이는 보험료의 계산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실하게 기재하면 해지나 면책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계약자의 의무이며, 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했을 경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보험료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보험자의 인수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둘째, 사고예방은 선량한 관리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다고 상법과 보험약관에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묵시하고 있다.

「고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기방화한 것이므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이며, 「중대한 과실」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손해방지의무는 사고발생후 계약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만큼의 손해를 보험금에서 감액하도록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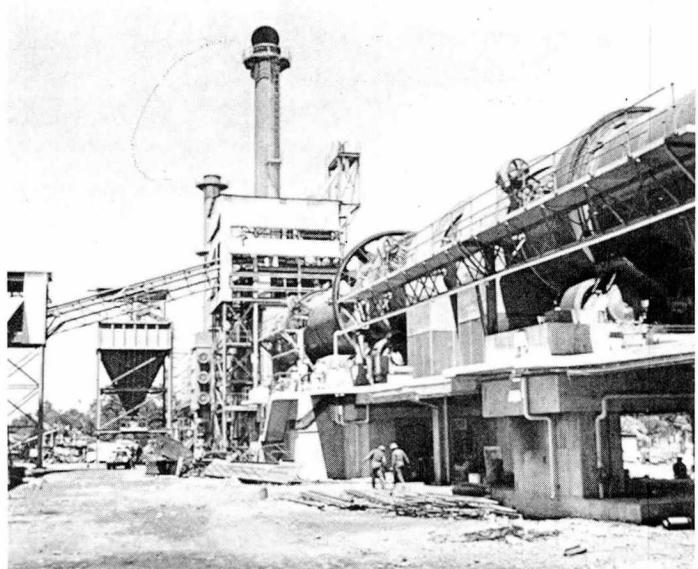
넷째, 손해발생후의 의무에는 ①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 ②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회사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 ③ 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당하게 작성해야 하는 의무 ④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 협조하는 의무등이 명시되어 있다.

### 4. 맺는 말

지금까지 화재보험에 있어서 방재에 관련되는 보험자의 역할과 계약자의 의무를 열거해 보았다.

흔히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 했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하면 보험회사도 “사고예방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다만 손해만 보상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지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위험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고를 예방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1차적인 책임은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가계에 있으며, 2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래서 헌법 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건축법·소방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시설기준·방재조직·교육훈련·사고예방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험관리에서의 보험회사의 위상은 무엇인가? 위험관리기법은 4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단계는 위험자체의 제거(risk control)이다.

위험을 회피(avoid)하거나 전가(transfer)하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성이 없으므로 다른 기법은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역할도 필요 없게 된다.

둘째단계는 사고의 예방(frequency control)이다.

사고예방은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가계의 책임이며,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대한 과실을 면책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사고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고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게 할인함으로써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경제적인 손실로 전가하기도 하나 화재보험은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셋째단계는 손해의 방지(severity control)다.

이 경우도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2차적인 책임은 소방조직을 가진 정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다만 현장에 입회하여 긴급조치를 지시하거나 증거를 보존하여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확보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이정도에 그칠 경우 손해의 강도(severity)는 의외로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 고안된 것이 바로 방재활동이다.

여기서 해당하는 것이 안전점검에 의한 방재시설의 확보, 방재지도와 계몽, 손해방지의무의 부과, 손해방지비용의 보상 등일 것이다.

네째단계가 손해복구를 위한 자금조달(loss recovery financing)이다.

기본적으로는 보유(retention)와 전가(transfer)의 두 가지 기법이 있으나 자기부담액(deductible)이나 비례보상 또는 일부면책 등의 경우는 보유와 전가가 서로 보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분할(sharing)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 전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피해자가 되는

셈이지만 보험회사의 부담부분이 클수록 당사자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령 일부보험인 경우 보험가액이 보험금액보다 현저히 높다면 비례보상에 의해 손해액의 상당부분을 계약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는 보험의 존립의의에 어긋나는 것이나 계약자가 스스로 방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므로 보험자의 1차적인 역할은 손해를 보상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돋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의 예방과 손해의 방지라는 통제기능을 끊게되면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그 손해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다시 계약자에게 이전되고, 3차적으로는 사회전체의 피해로 파급되기 때문에 방재활동은 보험회사와 국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방재 활동을 지혜롭게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⑥⑥